

2021년 아동분야사업안내

주요변경사항 [아동그룹홈 관련 부분]

출처 :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(T.02-364-1617)

No.	구분	페이지	변경내용	비고
1	[1권]_(2) 보호기간 연장	149	- 학원에서 교육 중인 20세 미만의 자(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경우)	-관련법률에 따른 등록학원으로 기준 명확화
2	[1권]_(2) 보호기간 연장	149	* 19세미만 아동이 보호종료를 신청한 경우 아동의 의지를 확인하고 종료조치	-연장보호 종료에 대한 보호아동 의지 확인
3	[1권]_(1) 아동학대 신고	153	시설장 및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의무 불이행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(범죄 신고전화 국번없이 112)	-아동학대특례법 강화에 따라 과태료 상향(500만원 -> 1000만원 상향)
4	[1권]_(1) 아동 인권 교육	155	※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시설보호 아동 중 어린이집, 유치원, 초·중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아동 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 생략 가능(재학(재원)증명서로 증빙)	-재학중 보호아동인 경우 재학증명서로 증빙 가능
5	[1권]_공동생활가정의 추가 설치 기준	169	● 공동생활가정의 추가 설치 기준 *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측정한 면적 기준임	-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82.5㎡ 이상

6	[1권]_다. 종사자 범죄경력 조회	189	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(<u>채용이 확정되고 최종 임용되기 전 성범죄 경력조회</u>)하여야 하며,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	-채용이 확정되고 최종 임용되기 전 성범죄 경력조회 필요
7	[1권]_나. 종사자 인권 보 호	192	● <u>아동의 부당한 요구, 폭언, 인격모독 등으로 인한 종사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서는 종사자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</u>	-종사자 인권보호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 명시
8	[1권]_마. 행정사항	204	(3) 예산 편성 시기를 감안하여 매 년 3월 이전 다음해 지원 필요시설 수요 제출 <u>※ 지자체의 평가가 완료된 신규지원 시설 은 즉시 보조금 지원될 수 있도록 수요 확인</u>	-보조금 지원대상 신규시설에 대한 빠른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역할 명시